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공고 번호 : 예천군 공고 제 2017-150호
2. 공고 기간 : 2017. 2. 8 ~ 2017. 3. 2.
3. 공고 내용 :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 토 지 표 시 |     |     |     |    |       | 공유 토지분할 신청인 및 동의인 |                            |                                    | 비 고 |
|---------|-----|-----|-----|----|-------|-------------------|----------------------------|------------------------------------|-----|
| 시·군·구   | 읍·면 | 동·리 | 지 번 | 지목 | 면적(㎡)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예천      | 보문  | 수계  | 496 | 전  | 3475  | 전 재 화<br>전 기 호    | 1965.10.29.<br>1944.12.20. |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br>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보문로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2월 7일

예 천 군 수

